

폭설 재해 적절한 보상대책 신속히 이루어 져야

지난 7, 8일 양일간에 내린 폭설로 인하여 많은 계사가 파손되는 등 육계 사육농가가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본회가 회원사를 통해 계약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집계한 피해 조사에 따르면 화인코리아를 제외한 전 회원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번 폭설로 피해를 당한 농가수도 전체 계열 생산 1536농가의 15.5%에 달하는 239농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피해농가가 보유중인 1천38개 계사

중 66.58%인 691개 계사가 완파되거나 반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생물피해에 있어서도 26만2천수가 폐사했으며 71만7천280수를 계사 파손으로 조기 출하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표면적인 피해일 뿐 이번 폭설로 인한 여파는 상당시일 지속될 전망이다. 일부 회원사의 경우 종계장의 파손으로 병아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계장이 없는 회원사의 경우는 계약사육농가의 계사 파손으로 병아리 입식계획에 차질을 빚어



회원사	사육농가	피해농가	피해농가 사육규모		피해내역			육계 피해액(천원)		육계 피해액(천원)		피해액 합계
			수수	계사수	피해계사수	폐사수수	조기출하수	육계	계사	종계	계사	
하림	600	39	1,079,700	159	112	230,000	109,000	315,240	3,360,000			3,675,240
마니커	180	39	991,000	178	100	163,000	133,500	243,660	3,000,000			3,243,660
해마로	140	16	467,600	66	42	175,300	86,300	241,428	1,260,000			1,501,428
체리부로	120	40	1,508,200	150	120	257,500	100,700	345,252	3,600,000			3,945,252
해표	90	19	587,600	84	52	14,600	59,400	38,904	1,560,000			1,598,904
동우	140	12	460,000	83	47	36,050	46,780	60,101	1,410,000	42,625		1,512,726
성화	90	18	599,000	98	49	159,000		190,800	1,470,000			1,660,800
우인	56	24	713,000	101	67	43,000	65,000	75,000	2,010,000			2,085,000
한일	120	41	1,212,000	163	123	262,000	60,000	336,000	3,690,000			4,026,000
합계	1,536	248	7,618,100	1,082	712	1,340,450	660,680	1,846,385	21,360,000	42,625		23,249,010

닭고기 수급계획 및 가격안정에 차질을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협회는 이와관련 지난 10일 긴급 회원사 재해대책 책임자 회의를 소집,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으나 현재 자연재해대책법 보상기준에 의해서는 피해 농가의 대부분이 무허가·무신고 간이 시설로 수해를 받을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농림부 차원의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자연재해대책법 보상기준에 의하면 축사파손·유실의 경우 600㎡(180평)이하의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만 국고 15%, 지방비 5%를 보조하고 용자 60%, 자부담 20%로 규정하고 있으나 육계사육의 전업화 추세로 대다수의 농가가 600㎡가 넘어 이 규정은 현실성이 없어 대폭 상향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600㎡가 넘는 경우도 용자 70%에 자부담 30%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대출 집행기관에서 선순위 담보를 요구하는 등 현 농가의 실정에서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수해 피해시에도 경험한 것으로 보상시기가 너무 느리고 피해 산정액수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지원으로 복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신속한 피해보상을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피해조사규모는 앞으로 육계 및 계육업계가 겪게될 피해의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다며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계사가 파손되고 사육중인 닭이 죽은 것에 불과하지만 파손된 계사를 철거하고 또 신속해 닭을 재 사육하기까지는 상당기간동안 아무 소득 없이 지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계열주체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육계 수급계획에 차질을 빚어 사업계획의 재수립은 물론이거니와 육계의 외부구매물량의 증가로 손실발생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육계 생산량의 감소로 육계산지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 경우 계열주체의 손실에 밖에 전개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들은 피해농가들이 담보능력이 없으니 신용보증으로 융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 내지는 계열주체에 일괄 지원하고 계열주체의 책임아래 농가에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육계계열주체에 대해서도 장기저리의 경영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생산시설 복구가 지연될 경우 전체 닭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에 큰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며 이 틈새를 이용, 수입닭고기가 범람 국내 육계산업이 일시에 붕괴할 우려가 있으니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입을 모았다. C

본회 폭설 피해에 따른 육계분야 긴급 지원대책 건의

하 국계육협회(회장 김홍국)는 파손된 사육시설을 긴급 복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파손된 축사의 대부분이 무허가 또는 무신고 보온덮개형 계사 등으로 정부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농가가 영세하여 자력복구가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특단의 정부지원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이번 폭설로 인해 계열화 생산 육

계사육시설이 대량 파손되고 사육중인 육계 134만수가 폐사하는 등 사육농가 및 계열화 업체에 막대한 피해가 있으며 금후 닭고기의 수급과 가격 안정이 크게 우려되는 만큼 긴급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본협회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농가 및 계열생산업체에 재해복구사업의 지원금이 아닌 저리 '농업경영개선자금'을 긴급 지원하여 주실 것

(1) 지원요청액 : 125억원

(총 소요액 250억원 × 50/100)

(2) 지원방법 : 피해농가의 경제능력 및 담보 등을 고려하여 계열업체에 일괄지원(융자)하여 계열업체로 하여금 해당농가에 배정(별첨 피해상황 표 참조)

나. 계사(축사) 파손 복구비 지원면적(600㎡)을 현 실정에 맞게 2,000㎡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
다. 정부에서 책정된 축사시설 복구 및 가축입식비를 신속하게 지원토록 조치 요망



1) 축사시설 복구 및 가축입식

공정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축사파손	계사-육계사	㎡	99,000	
	보은덮개용축사(철재파이프)	㎡	39,000	
가축입식	육계-병아리(감별주)	마리	427	
	-중추	마리	670	

2) 축사 파손 및 피해보상내역 및 조건

구분	공정별	공정별	공정별
소규모시설 (600㎡미만)	당해연도 건조가격	국고 15%, 지방비 5% 용자 60%, 자부담 20%	용자조건 • 금리: 5% •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대규모시설 (600㎡이상)	당해연도 건조가격	

3) 세제지원혜택(국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세금 납부기한 최장 6개월 연장 • 납부세액 2천만원 미만 납세담보 면제 • 계속사업자, 생산직 중소기업은 3천만원 미만 • 실질사업자는 직전년도 당해 세목 납세액 1억원 한도내 • 고지 및 말린세금(체납) 9개월까지 징수 유예 •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1년간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납세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가 교부한 재해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만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음.